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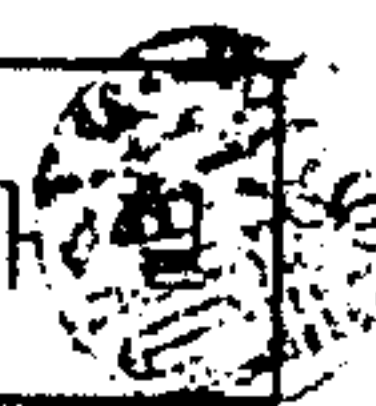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139 호
의결 년월일	1997년 2월 28일 (제 60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출자	보은군수
제안 년월일	1997년 / 월 24일

기획감사실장심사



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39

제출년월일 : 1997. / . 24.

제 출 자 : 보은군수

☐ 제 안 이 유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와 부합되지 않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기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용어의 정의가 변경
(예 : 일반폐기물, 다량폐기물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기존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 보은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이원화 되었던 조례를 폐지시키고 보은군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법 령

- 폐기물관리법

☐ 내 용

- 보은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보은군 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구, 가전제품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별표4의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등의 신축,증·개축이나 각종공사 과정에서 일시에 소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와 폐목재류, 폐종이류, 금속류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보은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7조 제1항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을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 2 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 4 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무】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5 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소각, 매립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용기 및 방법으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일자를 지정하여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7 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기준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8 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군수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음 각호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중간 적환시설
2. 최종처리시설
3.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및 장소
4. 기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 9 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의 출연금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3.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료 등

제 10 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별표1의 배출방법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4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폐기물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및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폐기물관리조례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 12 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3. 해수욕장, 낚시터, 등산로등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쓰레기봉투의 제작·공급등

제 14 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을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타는 쓰레기 흰색, 안타는 쓰레기 노랑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5 와 같다.

제 15 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해당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때에는 하도급금지, 불법유통방지 및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6 과 같다.

제 16 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7과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도로변 및 가로·골목길 쓰레기 수거하기 위하여 “리”(마을)별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 또는 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에게 일반용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 월60ℓ를 초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쓰레기봉투의 관리】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 4 장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의 부과징수

제 19 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단, 대형·건설폐기물등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할 경우 수집·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에 의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8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내에 행락객등 행위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처리비의 수수료를 별표3 의 기준에 의거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거 산정된 판매가격은 보은군 고시로 군민에게 알린다.

제 20 조 【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수수료】 ① 군수는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즉시 징수한다.

② 종량제 적용대상 품목이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기가 어려운 파유리등은 별표4의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며 수수료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즉시 징수한다.

제 21 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5 장 보 칙

제 22 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실적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생

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대행료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등
7. 기타 대행업자와 관련된 사항

③ 폐기물 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3 조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수집·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1일에 1회이상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실태,청소주기의 준수상태,수수료부과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 25 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령·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6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 27 조 【준용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비등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은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 6 장 별 칙

제 28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시설, 이의방법, 이의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에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가 명시된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자가 납부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⑤ 수납되는 과태료는 보은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 29 조 【의견진술】 군수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30 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시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

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 32 조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33 조 【준용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은군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제 1397호)와 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1409호) 및 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867호)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와 “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품목별 부과기준(제19조 제1항 관련)

(단위: 원/개)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500ℓ 미만	6,000	
	300ℓ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21인치 이상 42인치 미만	4,000	
	12인치 이상 21인치 미만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콘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미만	2,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응접세트	장의자	5,000	
	소형의자	4,000	
서랍장	5단 이상	4,000	
	4단 이상	2,000	
신발장	모든규격	2,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모든규격	4,000	
장식장	모든규격	4,000	

(단위: 원/개)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비 고
쇼파	대형 6인용	8,000	
	소형 6인용	5,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 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화일 캐비닛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그랜드	15,000	
올겐	모든규격	4,000	
책상	양수책상	7,000	
	편수책상	4,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주)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배출방법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 3일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후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2】 건설폐기물 및 생활(다량)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관련)

(단위 : 원 / m³)

구 분	수 집·운 반 처 리 비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건 설 폐 기 물	18,000	10,000	8,000
생활(다량)폐기물	10,000	5,000	5,000

(주) 1. 1m³ 미만의 경우에는 1m³로 적용한다.

2. 파유리 및 기타 폐기물

- 파유리 : 1개 마대당(40kg) 2,000원
- 기타폐기물 : 10ℓ 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

【별표3】 행락객에 대한 수수료를 (제19조 제3항 관련)

구 분	대인(14세 이상인자) 1인당 1일	소인(6세 이상, 13세 이하인자) 1인당 1일
수수료율	500원	300원

【별표4】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포장지, 달력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는 제거함 -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함.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전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포장상자,기타 골판지 상자)	- 비닐코팅 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배출 - 컵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비닐봉투 가능)에 넣어서 배출함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 제거 함.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농약병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배출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이물질을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 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 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	“
5. 플라스 틱류	- PET 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 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 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한 압착하여 부피감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페스티로폴	- 이물질 및 부착상표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별표5】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14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가로×세로cm)	호칭두께(mm)
일반용	5	26×46.5	0.015
일반용	10	33×40	0.020
일반용	20	41×49	0.025
공공용·일반용	50	56×67	0.030
공공용·일반용	100	71×85	0.040

【별표6】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5조 관련)

18 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49 cm	쓰레기봉투(20l) - 일반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보 은 군 수 연락처: 보은군 환경보호과 (전화 : 40-3335) 제작업체고유번호는품질인증표지	쓰레기봉투(50l)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보은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 은 군 수 연락처: 보은군 환경보호과 (전화 : 40-3335) 제작업체고유번호는품질인증표지
41cm		

【별표7】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16조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쓰레기봉투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출출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 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8】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9조 제2항 관련)

$$\text{쓰레기 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출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 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자립조는 60%로 하고 기존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용별 제작단가로 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text{쓰레기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비}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times 0.09$$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제28조 제2항 관련)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후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10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50	150	15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폐기물량이 1톤 미만시	300	300	300	
2) 폐기물량이 1톤 이상 3톤 미만시	400	400	400	
3) 폐기물량이 3톤 이상시	500	500	5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동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외)				
1) 폐기물량이 1톤 미만시	500	600	700	
2) 폐기물량이 1톤 이상 5톤 미만	600	700	800	
3) 폐기물량이 5톤 이상시	700	800	900	
2.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1)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보은군수가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	300	400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후	
2)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 제2항)	300	500	1,000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4항)	1,000	1,000	1,000	
5.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24조 제3항, 제41조)	1,000	1,000	1,000	
6.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법 제24조 제5항)	1,000	2,000	2,000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3항)	1,000	2,000	3,000	
8.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39조 제1항)	1,000	1,000	1,000	
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0	400	500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400	500	1,000	
1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3조 제1항)	300	500	1,000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후	
1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	1,000	1,000	1,000	
1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1항)	1,000	1,0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항목 이상 일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가 부과한다.

2. 위반 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산입으로 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1호 서식】 과태료처분 통지 (제28조 제1항 관련)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브 은 군 수 (인)

【별지2호 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 (제28조 제3항 관련)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보은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별지3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제28조 제4항 관련)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별지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30조 제1항 관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부 과 기 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대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브 은 군 수 귀하				

【별지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제30조 제2항 관련)

제 호			
수 신		발 신 : 브 온 군 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대 의 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간	⑦ 이 의 제 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6호 서식】과태료 납부 통지서 (제28조 제1항 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원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원

영수필통지서
(보 은 군)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봉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보은군수 귀하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별지7호 서식】과테로 수납부 (제32조 관련)

[illegible]

